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502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3. 5. 9.

판결 선고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D 사이에 2019.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2019. 8. 26. 접수 제117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1. 19. E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8. 11. 1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해 "6,925,461원 및 그 중 4,227,450원에 대한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82097)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 확정되었다.

다. D는 2019.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는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지분의 2019. 5. 31. 및 2020. 5. 29. 기준 공시지가는 21,075,750원(= 4,959m² × 8,500원/m² × 1/2 지분)이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에서 2019. 2.경 감정결과 산출된 최저매각가격은 32,23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으로 D는 피고의 큰아버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의 명의자는 피고의 큰할아버지인 G인 사실, ② D의 채권자였던 주식회사 H은 2019. 1. 10. 이 사건 지분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 이하 이로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19. 4. 22. 주식회사 H에 대해 D를 대신하여 46,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9. 8. 19.까지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④ C는 D가 추후 또 채무를 부담할 경우 조상의 선산의 소유권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경매취하 직후인 2019. 8. 26. D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본인의 아들인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게한 사실, ⑤ 이후 2019. 12. 23.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 2019카단11931)을 받았는데, 이에 C가 2022. 7. 27. 주식회사 I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로 하여금 2022. 8. 24.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 측1)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측은 이 사건 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 경매를 저지하였는바 피고 측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D의 채권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승환

별지

1) 피고, C, G 등 피고와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지분의 처분 등에 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자들을 "피고 측"이라 지칭한다.